고시 제 2016-380호

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2월 29일

서 산 시 장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·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(이하 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와 그 어선 및 낚시어선의 승 객에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시간)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 이라 한다)의 영업시간은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일출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한다. 단,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야간항해 가능으로 검사된 낚시어선은 출입항 기준으로 하절기(4.1~10.31) 04:00~20:00까지, 동절기(11.1~3.31) 05:00~19:00까지로한다.

제4조(운항회수)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1일 2회 이상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1회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낚시승객이 낚시장소에

- 있을 경우 2회차 승객 수는 $1 \cdot 2$ 회 승객수를 합하여 승선정원을 초과 할 수 없다.
- ② 낚시어선업 행위는 당일 입출항을 하여야 하며 야영하면서 낚시 어선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5조(영업구역)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 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, 해상교통안전법, 원자력법, 항만법,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
- 2. 충청남도 해상 및 경기도와 공동영업 구역으로 지정된 해상을 벗어난 구역
- 3. 서해특정 해역에서 선상 낚시행위 금지
- ② 낚시어선업자는 모든 지역 무인도서, 갯바위, 간출암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안전운항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과 안전의무를 준수할 것
- 2. 정원초과승선 금지 및 낚시어선 승선정원 및 승객준수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하며, 낚시어선에 승선원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킬 것
- 3.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체계(선주· 선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) 를 유지하고,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들을 안전 하게 대피시킬 것
- 4.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, 경찰관서, 군부대, 소방서 등에 대피조치를

요청할 것

- 5. 다른 시·군 관할수역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령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
- 6.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다에 유류·분뇨·폐기물을 버리지 않아야 하며, 승객들이 생산한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한 쓰레기 봉투와 휴지통을 선내에 비치할 것
- 7. 강풍, 풍랑, 해일, 태풍주위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해상에서도 시계(視界)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, 그 밖의 출입항신고 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의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을 하지 말 것
- 8. 음주상태 및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지 말 것
-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2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3.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
 - 4.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·채취 금지기간·체장·체중 미만의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
 - 5.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될 경우 낚시 어선 선장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6. 영업시간외 항행, 영업구역이 아닌 수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7. 낚시어선 승객은 선내에서 음주 금지

제7조(출항 전 안전점검 및 안전속력 항행의무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 .기관 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 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 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 8조(낚시어선 승객의 승선자 명부 성실 작성의무) 낚시어선에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 작성 시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고발생의 보고)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및 충돌·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시 및 인접시장·군수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(서산시 고시 제 2013-23호. 2013.2.19.)는 폐지 한다.